

의 결



국민권익위원회

ACRC

국 민 권 의 위 원 회 의 결

의안번호 제2022 - 862호

의 안 명 「국가연구개발사업 학생연구자(대학·대학원생) 근무환경 개선방안」

대상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공립대학교

의 결 일 2022. 12. 19.

주 문

「국가연구개발사업 학생연구자(대학·대학원생) 근무환경 개선방안」 권고안을 별지와 같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규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국·공립대학교 총장에게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22년 12월 19일

위원장 전현희

위원 안성욱

위원 김태규

위원 김기표

위원 박계욱

위원 박상희

위원 박홍규

위원 임성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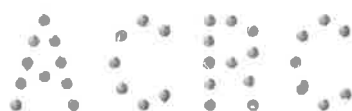
위원 방이엽

위원 손난주

위원 최정묵

위원 송현주

위원 홍세욱



[별지]

국민의 생활을 위한 정부기관
보다 나은 [국민권익위원회]

국가연구개발사업
학생연구자(학부, 대학원생) 근무환경 개선방안

2022. 12.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목 차

I. 추진개요	1
II. 현 황	2
III. 문 제 점	4
(1) 학생연구자 휴가 관련 규정 불명확	4
(2) 학생연구자 휴가 미보장으로 사기 저하	5
IV. 개선방안	7
(1) 학생연구자 휴가일수 보장	7
(2) 학생연구자 근무 관련 정보 공개	8
V. 조치사항	9
[참고] 관련법령 등	10



I. 추진개요

< 추진근거 >

- (국정과제 76) 자율과 창의 중심의 기초연구 지원 및 인재양성
- 대학·대학원생 교육·연구관련 고충 청취 간담회 제도개선 건의사항('22. 9. 30.)

□ 추진배경

- 정부는 연구개발 활성화, 중소기업 육성 등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학 내 산·학·연 협력기구 설치, 연구비 등 지원
 - ※ (근거)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03. 9. 1. 전면 개정)
 - ※ (현황) '15년 기준 423개 대학 중 356개 대학에 산·학·연 협력기구 설치(84.2%)
- 코로나 19, 우크라이나 전쟁 등 경제여건 악화 속에서 휴식없는 연구 진행, 연구소 지원 시 관련정보 파악 한계 등 학생연구자 사기저하 요인으로 인해 대학 내 연구개발 경쟁력 약화 우려
 - ※ 카이스트 대학원생 평균 휴가일수는 6.41일로 연간 15일을 보장받고 있는 전문 연구요원(대체군복무자)보다 열악한 실정
- 국·공립대 학생연구자 사기진작과 근무환경 개선을 통해 '공정과 상식이 바로 서는 대한민국'을 구현하여 국가 연구개발 경쟁력 강화 도모

□ 추진경과

- 2022. 10.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작성
- 2022. 11. 관계기관 협의
- 2022. 12. 소위, 전원위 상정



II. 관련현황

□ 국·공립대 현황('20년 기준 교육부 대학알리미 자료 발췌)

○ (대학수) 4년제 국·공립대학은 46개교(7개 전문대 포함시 53개)

(단위 : 개교)

계	국립대(일반대)	국립대(교육대)	공립대(일반대)	국립대법인	특별법대학
46	27	10	1	2	6

※ 대학원 대학, 전문대학, 기능대학 제외

※ (특별법대학)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전통문화대,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 (구성원) 교원 48,801(전임교원 18,112), 학생 617,695, 직원 19,880명

(단위 : 명)

교원		재적 학생	직원
전체교원수 (강사제외)	전임교원수		
48,801 (33,799)	18,112	617,695	19,880

※ 폐교된 경남과학기술대, 진주산업대 포함

○ (재정규모) 46개교 예산 약 7조 2,598억원 규모

(단위 : 억원)

계	국립대	공립대(일반대)	국립대법인	특별법대학
72,598	43,436	1,090	10,906	17,166

□ 과기정통부 ‘학생연구자 지원규정 작성기준’

- (목적) 학생연구자가 연구와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대학(원) 문화 및 연구환경 조성을 위해 학생연구자 및 구성원 간 노력해야 할 기본적인 사항 명기

※ (근거)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21. 1. 1. 시행) 제40조 제7항

⑦ 학생연구자에게 학생인건비를 지급하는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제88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같은 항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을 포함하는 학생연구자 지원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생연구자 지원규정의 공개에 관하여는 제88조제2항에 따른다

- (대상기관) 학생연구자가 소속된 연구개발기관

※ (학생연구자 범위)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학사·석사·박사 학위과정 중에 있는 학생 등

- (주요내용) 연구개발기간 의무, 연구책임자의 의무, 학생연구자의 의무, 학업·연구활동 보장, 학생연구자 처우, 학생인건비 지급 및 관리, 인격권·건강·휴식 보장 등 학생연구자 인권 및 권익보호 방안, 고충·상담 창구 운영, 평가반영·징계 등 위반 시 조치사항 등

- (조치사항) 작성기준을 참고하여 기관별 ‘학생연구자 지원규정’ 제정

□ 국·공립대 ‘학생연구자 지원규정’ 제정 현황

- 53개 국·공립 대학 중 32개 대학 제정·운영 중

※ 일반대학 8개, 교육대학 6개, 도립대(전문대) 7개 등 미제정(대학 홈페이지 규정 확인 결과)



Ⅲ. 문 제 점

□ 학생연구자 휴가 관련 규정 불명확

- 과기정통부 ‘학생연구자 지원규정 작성기준’ 상 대학별 학생의 건강과 휴식보장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였으나 **명확한 최소 휴가 일수 미제시**

※ (참고) ‘학생연구자 지원규정 작성기준’ ⑥ 학생연구자 인권 및 권익보호

19. (건강과 휴식 보장)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자의 건강하고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위하여 충분하고 적절한 휴식을 제공하여야 한다.

- 이에 따라 각 대학 내규 내 휴가 일수 관련 규정이 불명확하여 학생 연구자 휴가 보장 한계

※ 전국 국·공립대 32개 대학이 ‘학생연구자 지원규정’을 제정, 휴식 제공 의무를 규정하였으나 보장 휴가일수는 미규정

< 전국 국·공립대 ‘학생연구자 지원규정’ 실태(’22. 10월, 국민권익위 실태조사) >

학생연구자 지원규정		휴가일수	
제정	미제정	명시	명시 안함
32 (지침 3)	21	-	32

※ 사립대는 포항공대(연간 10일 보장) 외 대학원생 등 학생연구자 휴가보장 대학 없음

【 (참고) 포항공대 ‘대학원생 휴식 및 재충전 제도 운영지침’(’21. 9. 6. 제정) 】

제5조(제도운영)

1. 연구책임자(지도교수)는 대학원생이 연구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1년 단위로 일정한 ‘휴식 및 재충전’ 일수를 부여할 수 있다.

(이하생략)

※ ’22년 **학내 공지로 연간 ‘10일’의 휴식 및 재충전 일수 보장**

□ **학생연구자 휴가 미보장으로 사기 저하**

- 연구실에서 휴가가 없는 곳도 있어 연간 15일을 보장받고 있는 전문연구요원(대학원생 대체군복무자)보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실정

< 이공계 연구실 휴가 관련 설문조사 결과('19. 10월, 국가기술자문회의) >

없음	2일 이하	3일	4일	5일	6일	7일	10일	14일	15일	기타
380명 (29%)	37명 (3%)	128명 (10%)	40명 (3%)	168명 (13%)	53명 (4%)	107명 (8%)	185명 (14%)	45명 (3%)	77명 (6%)	110 (8%)

※ 전문연구요원은 1년 80% 이상 출근 시 15일 유급휴가 부여(근로기준법 제60조,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관리규정 제51조)

【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관리규정(병무청 훈령) 제51조(휴가) 제1항 】

- ① 연구요원 및 기능요원의 휴가는 「근로기준법」 또는 「선원법」에 따른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제1항 】

-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해외 주요 대학 사례의 경우 연간 10 ~ 25일 휴가일수 보장

< 해외 주요대학 대학원생 휴가보장일수('18 ~ '21년, 언론보도) >

구분	Caltech (미국)	MIT (미국)	프린스턴 (미국)	하버드 (미국)	ETH Zurich (스위스)	싱가포르 국립대학 (싱가포르)
휴가규정 (연간)	21일	2주 (근무일 기준 10일)	4주 (근무일 기준 20일)	11.5일 ('20년 기준)	25일	21일

- 휴가일수 부족, 잦은 야근에 따른 휴식 부족은 대학원생 등의 사기 저하로 이어져 중장기 국가연구개발 경쟁력 약화 초래

【 참고 ① 】 '21년 카이스트 대학원 '연구환경실태조사' 결과

- 연구실 보장 연평균 휴가일수는 9.63일인데 비해 사용하는 휴가일수는 6.41일
- 주중 연구실 체류시간은 평균 약 10시간(607분), 휴일 체류시간은 약 3시간(194분)

【 참고 ② 】 '18년 포항공대 대학원 '휴가 실태조사' 결과

- 1,092명 대상 조사결과 16%가 '휴가가 없다'라고 답했고, 휴가받은 학생은 평균 7.7일 휴가 사용
- 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하는 학생은 56.2%에 불과, 응답자 중 79.7%가 휴일 출근

【 민원 ① 】 '22. 9. 30. 대학·대학원 고충청취 간담회 건의사항

-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연구실이 많으며, 국내 대학 중 대학원이 휴가를 갈 수 있다고 명시한 대학은 포항공대가 유일함. 이는 대학원생의 근로자로서의 지위와 학생으로서의 지위 등 이중적 지위 때문에 나오는 모순으로 방학이 있는 학생의 권리와 15일 이상 연차 휴가가 있는 근로자의 권리 등 양쪽 모두의 권리를 얻지 못하고 있음. 이에 대한 개선 시급

- 연구실 등에서 휴가 등 근무 관련 정보를 제공하지 않음에 따라 대학(원)생들이 '깜깜이' 지원하는 불편 발생

【 민원 ② 】 '22. 9. 30. 대학·대학원 고충청취 간담회 건의사항

- 인건비, 출퇴근 시간, 휴가일수 등 보통 기업이라면 당연히 알려져 있는 정보들이 대학원 연구실의 경우 공개되지 않고 있음. 김박사넷과 같은 교수 평판 조회 사이트는 거짓정보 또는 인신공격성 정보만 있는 상태이며, 대부분 본교 출신 학생들은 개략적인 정보를 갖고 지원이 가능하지만, 타학교 출신 학생들은 정보 없어 지원해야 하는 불편이 있으므로 연구실 정보의 투명한 공개 필요

IV. 개선방안

□ 학생연구자 휴가일수 보장

- 학생 연구자의 휴식권 존중과 연구 몰입도 제고를 위해 각 대학들로 하여금 학생들에게 일정 날짜 이상 휴가를 보장하도록 개선

⇒ 과기정통부 '학생연구자 지원규정 작성기준'에 반영

< 개선방안 예시 >

현 행	개 선(안)
19. (건강과 휴식 보장) 연구책임자는 학생 연구자의 건강하고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위하여 충분하고 적절한 휴식을 제공하여야 한다.	19. (건강과 휴식 보장) 연구책임자는 학생 연구자의 건강하고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위하여 충분하고 적절한 <u>휴식과 연간 ○○일 이상의 휴가</u> 를 제공하여야 한다.

- 각 대학들은 일정 날짜 이상 범위내에서 연구실별로 특성에 맞게 휴가를 보장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정비

※ 대학별 필요시 대학원생 휴가보장 관련 지침 제정·운영

【 (참고) 포항공대 '대학원생 휴식 및 재충전 제도 운영지침' 주요내용(21. 9. 6. 제정) 】

- (적용대상) 본교(일반/전문/특수대학원) 재학 중인 대학원 적용(제2조)
- (적용범위) 연구활동에만 적용되며, 교과목 수강에는 미적용(제4조)
- (제도운영) 연구책임자 1년단위 일정한 휴식일수 부여 / 연구책임자 사전 승인 절차 등

⇒ 대학별 '학생연구자 지원규정' 개정

< 개선방안 예시 >

현 행	개 선(안)
<p>제○조(건강과 휴식 보장) 연구책임자는 학생 연구자의 건강하고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위하여 충분하고 적절한 휴식을 제공하여야 한다.</p> <p>②(신설)</p>	<p>제○조(건강과 휴식 보장) ①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자의 건강하고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위하여 충분하고 적절한 휴식과 연간 ○○일 이상의 휴가를 제공하여야 한다.</p> <p>②총장은 휴식 및 휴가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세부 지침을 제정할 수 있다.</p>

□ 학생연구자 근무 관련 정보 공개

- 학생들의 근무, 휴식 관련 권리 보장 및 연구실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휴가일수, 개략적인 출퇴근 정보 등 연구실 관련정보 제공 근거 마련

⇒ 과기정통부 '학생연구자 지원규정 작성기준'에 반영 및 대학 별 '학생연구자 지원규정' 개정

< 개선방안 예시(학생연구자 지원규정 작성기준) >

현 행	개 선(안)
<p>4. (연구실 운영 기준 마련) 연구책임자는 연구실 내 학생연구자의 학업·연구 활동 보장, 처우, 졸업요건, 업무량 및 휴일 등 연구환경에 대한 세부 운영 기준을 마련·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4. (연구실 운영 기준 마련) 연구책임자는 연구실 내 학생연구자의 학업·연구 활동 보장, 처우(휴가일수, 출·퇴실 시간), 졸업 요건, 업무량 등 연구환경에 대한 세부 운영 기준을 마련·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V. 조치사항

대상기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공립대학교(53개)

조치내용

세부과제명	조치사항	대상기관 (조치기한)
1. 학생연구자 휴가 일수 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으로 하여금 학생들에게 일정 날짜 이상 휴가를 보장하도록 개선 ⇒ 과기정통부 '학생연구자 지원규정 작성기준'에 반영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들은 연구실별로 특성에 맞게 휴가를 보장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정비 ⇒ 대학별 '학생연구자 지원규정' 개정	국·공립 대학
2. 학생연구자 근무 관련 정보 공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휴가일수 등 연구실 기본정보 정기 제공 근거 마련 ⇒ 과기정통부 '학생연구자 지원규정 작성기준'에 반영 및 대학 별 '학생연구자 지원규정' 개정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국·공립 대학

조치기한 : 2024. 6월

참고자료

관련법령 등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과기정통부 고시)

제40조(정부출연기관 학생인건비 사용기준) ① 정부출연기관의 장은 학생연구자의 학생인건비를 월 단위, 학기 단위 또는 학년 단위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학생인건비계상률에 따라 계상하여야 한다.

해당 월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에서 제7조제1호에 따른
학생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제3항에 따른 학생인건비 계상기준

- ② 정부출연기관의 장과 학생연구자는 협의하여 학생인건비계상률을 월 단위로 산출하고, 이를 반영하여 별지 제1호 또는 제2호 서식에 따른 학생연구자 연구참여확약서를 학기 단위 또는 학년 단위로 작성하여야 하며, 이를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에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까지 입력하여야 한다.
- ③ 정부출연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 이상으로 학위과정별 학생인건비(4대 보험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은 제외한다) 계상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과, 연구부서, 연구책임자 등에 따라 별도의 기준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1. 학사과정(전문학사과정을 포함한다) : 월 1,000,000원
 2. 석사과정 : 월 1,800,000원
 3. 박사과정 : 월 2,500,000원
 4. 통합과정 :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준을 고려하여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 금액
- ④ 정부출연기관의 장은 소속 학생연구자의 월별 총인건비계상률이 10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총인건비계상률을 산정하는 데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소속 학생연구자가 고등교육재정지원사업 및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으로부터 받는 인건비(학생인건비 포함) 및 장학금
 2. 「고등교육법」 제14조의2에 따른 강사나 제17조에 따른 겸임교원 및 초빙교원으로 임용된 학생연구자가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2항 단서에 따른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사람인 경우에 강사, 겸임교원 및 초빙교원으로서 받는 인건비
 3. 소속 학생연구자의 기타 단거근로소득 및 창업소득

- ⑤정부출연기관의 장은 학생인건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별도 계정을 설정하여 여러 연구개발과제의 학생인건비를 이체 또는 계정대체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부출연기관의 장은 학생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별 학생인건비계상률을 관리하여야 한다.
- ⑥정부출연기관의 장은 다른 기관·단체에 소속된 학생연구자의 학생인건비를 계상한 때에는 그 금액과 학생인건비계상률을 해당 학생연구자의 소속 기관·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⑦학생연구자에게 학생인건비를 지급하는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제88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같은 항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을 포함하는 학생연구자 지원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생연구자 지원규정의 공개에 관하여는 제88조제2항에 따른다.
- ⑧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속 학생연구자가 있는 연구개발기관이 학생연구자 지원규정을 마련·운영하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학생연구자 지원규정 작성 기준을 마련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 등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 과기정통부 ‘학생연구자 지원규정 작성기준(안)’

① 목적

- 본 작성 기준(가이드라인)의 목적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자가 연구와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대학 및 대학원 문화 정착을 위해, 학생연구자 처우, 인권 및 권익보호 및 학생인건비의 체계적인 관리·운영 등에 관하여 연구개발기관이 준수해야 할 기본적인 사항을 제시하는 데 있다.

② 적용범위

- 본 작성 기준의 학생연구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학사·석사·박사 학위과정(전문학사, 통합과정 포함) 중에 있는 학생을 의미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학생연구자에 포함하여 활용할 수 있다.

가. 휴학생 중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를 위해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

나. 수료생 중 해당 기관의 연구생으로 등록 후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자

다. 신규 또는 후속 연구개발과제를 준비하고 있는 학생연구자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별표2 비고 학생연구자 정의 및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고시」 제2조 제14호, 제91조 제8항 참고

③ 총론

1. (연구개발기관의 의무) 연구개발기관은 다음 각 호의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

- 가. 학생연구자의 학업·연구 활동 보장, 처우, 인권 보호 및 관리·감독 등 학생연구자 제도운영에 관한 사항
- 나. 학생인건비 지급을 위한 계정*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경우 학생인건비통합관리계정, 비통합관리기관의 경우 연구개발과제계정
- 다. 학생인건비 수입·지출·잔액 관리에 관한 사항
- 라. 전산시스템 구축 등 효율적인 학생인건비 지급관리체계 마련에 관한 사항
- 마. 학생연구자의 연구참여확약서 체결, 상해·사망에 대비하는 보험 또는 「연구실안전법」에 따른 보험 가입에 관한 사항
- 바. 학생인건비 부당회수(미지급 포함) 방지에 관한 사항
- 사. 그 밖에 학생연구자 제도운영을 위해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연구책임자의 의무) 연구책임자(지도교수)는 다음 각 호의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

- 가. 학생연구자와 협의하여 연구참여확약서를 체결하고 신의와 성실에 따라 준수
- 나. 학생연구자를 성실히 지도하고, 연구윤리 및 연구보안을 준수
- 다. 학생연구자에 대한 학생인건비·연구수당 지급, 연구개발 성과에 대한 권리 보장 등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

3. (학생연구자의 의무) 학생연구자는 다음 각 호의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

- 가. 연구책임자의 지도에 따라 연구참여확약서에서 정한 담당업무를 신의와 성실에 따라 수행
- 나. 연구수행 시 연구윤리 및 보안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특이사항은 연구책임자에게 보고
- 다. 학적변동, 업무수행 불가능, 취업 및 학생인건비 외 소득 발생 등 변경사항 발생 시 연구책임자 및 연구개발기관과 사전 협의 및 변경사항 통보

4. (연구실 운영 기준 마련) 연구책임자는 연구실 내 학생연구자의 학업·연구 활동 보장, 처우, 졸업요건, 업무량 및 휴일 등 연구환경에 대한 세부 운영 기준을 마련·운영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학생연구자의 학업·연구 활동 보장

5. (연간 활용계획 수립) 연구책임자(지도교수)는 학생연구자 운영규모, 구체적 역할 및 처우 등을 포함한 학생연구자 연간활용 계획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책임자는 전년도 활용인원, 연구개발과제의 규모 및 학생인건비 재원 등을 고려하여 적정 학생연구자가 연구에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6. (연구참여확약 체결) 연구개발기관의 장(연구개발기관 내부규정에 따라 기관장의 업무를 위임받은 자 포함. 이하 같다.),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자 연간 활용계획에 따라 학생연구자와 협의를 거쳐 연구참여확약서를 작성하고 학기(또는 학년) 단위로 연구참여확약서를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연구참여확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가. 연구 주제 및 분야, 주요 참여과제명, 연구수행내용, 역할, 참여기간 등 담당업무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나. 금전적 보상, 학생인건비 부당회수 금지, 안전 및 인권·권리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 연구개발업무와 무관한 업무는 명시할 수 없다.

7. (연구참여확약 변경) 연구개발기관의 장과 학생연구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만 협의를 거쳐 연구참여확약서를 변경할 수 있다.

가. 연구개발과제 협약 체결·변경·중단·해약

나. 학생연구자 학적 변동

다. 학생연구자 개인의 사정

라. 학생연구자가 질병·실종·형사소추 등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8. (업무범위 제한)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자에게 연구참여확약서 내용과 무관한 업무를 지시하거나 협약에 명시되지 않은 기관 내·외 기여, 봉사 활동이나 사적 업무에 동원해서는 안된다.

9. (학업·연구권 보장)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자가 연구에 참여하는 동안 자율적인 연구 활동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0. (부당업무 거부권 보장) 학생연구자는 연구참여확약서 내용과 무관한 업무 등 부당 업무를 거부할 권리를 가지며, 연구책임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5 학생인건비 지급 및 관리

11. (학생인건비 지급기준) ① 학생인건비는 계상률 100%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가. 학사과정 : 월 _____ 원

나. 석사과정 : 월 _____ 원

다. 박사과정 : 월 _____ 원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40조 제3항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이 계상률 100%를 기준으로 학사과정 월100만원, 석사과정 월180만원, 박사과정 월250만원 이상으로 정하는 금액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116조제1항에 따라 「학술진흥법」에 따른 학술지원사업 중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의 학생인건비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별표7]의 학생인건비 계상기준에 따른다.

12. (학생인건비 안정적 지급) ① 연구개발기관은 학생인건비를 공정하고 안정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기관 내 학생인건비 산정 기준 마련, 균등지급 체계 마련, 학생인건비 재원 확대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자의 연구참여

정도에 따라 학생인건비를 산정하며, 연구성과에 따라 연구수당·기술료 보상을 산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3. (학생연구자별 학생인건비 산정)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자별 인건비 산정 시 연구 참여 내역, 참여기간 및 참여시간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산정하여야 한다.

14. (학생인건비 지급)

<학생인건비 비통합관리기관>

① 연구개발기관(또는 산학협력단, 연구지원부서, 연구행정부서 등 학생인건비 관리부서)은 연구참여확약서가 적절히 작성되었는지 등을 확인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연구개발기관은 연구참여확약서에 따라 매월 학생연구자의 본인명의 계좌로 학생인건비를 이체하는 등 학생연구자 본인이 수령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

① 연구개발기관(또는 산학협력단, 연구지원부서, 연구행정부서 등 학생인건비 관리부서)은 연구참여확약서가 적절히 작성되었는지 등을 확인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연구개발기관은 연구참여확약서에 따라 해당 통합관리계정에서 매월 학생연구자의 본인명의 계좌로 학생인건비를 이체한다. ③ 학생연구자의 계좌는 1인 1계좌를 원칙으로 한다.

15. (학생인건비 관리) 연구개발기관은 학생인건비 수입·지출·잔액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고, 사용자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 구축 등 관리체계를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학생인건비 관리 등을 위한 세부 사항은 별도의 지침에 따라 운영할 수 있다.

16. (자체점검) 연구개발기관은 동 규정에 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연 1회 이상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별지 제8호 서식을 활용하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아울러 자체점검 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7. (학생인건비 부당회수 금지) 누구든지 학생인건비를 학생연구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학생연구자에게 지급된 인건비를 회수하여 관리 또는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연구개발기관은 학생인건비의 부당회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학생인건비 부당회수 행위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및 하위규정에 따라 제재 대상임

⑥ 학생연구자 인권 및 권익보호

18. (인격권 보장) 폭언·폭행·성추행·성희롱 등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해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하여야 한다.

19. (건강과 휴식 보장)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자의 건강하고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위하여 충분하고 적절한 휴식을 제공하여야 한다.
20. (안전 보장) 연구개발기관은 학생연구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연구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학생연구자의 상해·사망에 대비하여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21. (재정운영 정보 공개) 학생연구자는 본인이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행현황(통합관리기관의 경우 본인이 소속된 통합관리계정의 연구개발과제 수행현황), 학생 인건비 규모 등에 대한 정보를 연구개발기관 또는 연구책임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구개발기관 또는 연구책임자는 해당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타 학생연구자의 지출 내역 등 개인정보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22. (고충·상담 창구운영) 연구개발기관은 연구참여확약서의 조건 위반, 학생연구자의 권리 침해 등에 대해 학생연구자가 공식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고충·상담 창구를 운영하여야 하며, 연구개발기관이 학생연구자로부터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받은 경우, 비공개 원칙이 보장되는 범위 내에서 문제가 신속히 해결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각 연구개발기관에 유사한 기능으로 운영 중인 고충·상담 창구 활용을 권장
23. (위반 시 조치) ① 학생연구자는 연구책임자 등이 동 규정을 위반한 경우 기관 내 제반 절차에 따라 연구책임자 등에게 시정을 요구 할 수 있다. ② 학생연구자는 제1항에 따라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연구책임자 등의 시정이 없거나 미비할 경우 인권센터, 연구윤리감사실, 감사팀 등 기관 내 관련 부서에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연구개발기관은 조사결과에 따라 학생연구자의 지도교수 변경, 연구책임자의 개인평가에 반영, 학생연구자 정원(TO) 조정, 징계위원회 회부, 연구책임자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해야 한다.

7]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제도 운영

※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에만 해당하며, 「학술진흥법」에 따른 학술지원사업 중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의 학생인건비는 통합관리제도를 적용하지 않음

24. (통합관리계정 설정) ① (연구개발기관단위 통합관리기관의 경우)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계정을 연구개발기관(학과, 산단, 단과대 등) 단위와 연구책임자 단위로 병행하여 설정하고 학생인건비를 적립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② (연구책임자단위 통합관리기관의 경우)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계정을 연구책임자 단위로 설정하고 학생인건비를 적립 및 관리하여야 한다.
25. (연구개발기관계정 설정) 통합관리기관장은 연구개발기관계정을 학과 단위(대학의 경우 산단·단과대, 출연연의 경우 연구부서 등 통합관리유형에 맞게 선택)로 설정하고, 소속 연구책임자계정의 학생인건비 재원의 일부를 학과별 계정에 적립 및 관리할 수

있다. 특히 다음 각 호의 학과에 대해서는 연구개발기관별 계정에서 학위과정별로 일정 금액을 균등지급한다.

가. A학과(석사과정 월 _____ 원, 박사과정 월 _____ 만원)

나. B학과(석사과정 월 _____ 원, 박사과정 월 _____ 만원)

다. C학과(석사과정 월 _____ 원, 박사과정 월 _____ 만원)

※ 연구개발기관계정 설정은 기관 단위 통합관리기관만 적용

※ 균등지급 금액을 자체규정에 명시하는 것을 권장하나, 학과장 회의 등 내부회의를 통해 학기별(또는 학년별)로 별도로 정할 수 있음

26. (균등지급 대상) 균등지급대상자는 균등지급대상자 선정일 기준 연구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연구자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연구개발기관계정별 학생인건비 잔액, 소속 연구책임자계정의 학생인건비 잔액 등을 고려하여 학과장 협의 등 내부 회의를 거쳐 균등지급 대상자를 조정할 수 있다.

※ 연구개발기관 단위의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만 적용

정본입니다.

2022. 12. 20.

국 민 권 의 위 원 회



국민권익위원회